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2022.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소비기한 설정기준으로 개정하고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 등 관련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 10조, 제 11조, 제12조, 제 13조, 제15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안전한계기간”, “소비기한”, “권장소비기한”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고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2-100호(2022. 2. 16. ~ 2022. 3. 16.)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499호(2022. 2. 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서 소

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2.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3. “권장소비기한”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 ①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소비기한 설정실험”으로 한다.

제5조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8조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소비기

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을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권장유통기간”을 “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가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의 권장소비기한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달걀의 유통기한 설정)”을 “(달걀의 소비기한 설정)”으로 하고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별표 4를 참고할 수 있다.”를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를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식품의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를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Ⅲ. 1. 머. 1). 가)의 우유류(살균제품에 한한다)는 2031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권장유통기간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2조제3호에 따른 권장소비기한이 신설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권장유통기간을 참고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 3.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0)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로 한다.
- 제2. 4. 4)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 ②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2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 제21조제5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 별표 1 및 별표 1의2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으로써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2. “소비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3. “권장유통기간”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유통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 가능 기간을 말한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 ----- -----. 1. “ <u>품질안전한계기간</u> ”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한다. 2. “ <u>소비기한</u> ”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3. “ <u>권장소비기한</u> ”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현 행	개 정(안)
<p>4. (생 략)</p> <p><b>제2장 소비기한 설정기준의 일반 원칙</b></p> <p>제3조 (생 략)</p> <p>제4조(소비기한 설정방법 등) ①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 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유통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p> <p>②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수행하지</p>	<p>4. (현행과 같음)</p> <p><b>제2장 소비기한 설정기준의 일반 원칙</b></p> <p>제3조(현행과 같음)</p> <p>제4조(-----)① -----</p> <p>-----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 -----</p> <p>② 소비기한 -----</p>

현 행	개 정(안)
<p>못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통기간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별표 1의 업무흐름도 참조).</p> <p>1. 식품, 식품첨가물은 유통기간 설정실험이 가능한 타 국내외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축산물은 타 축산물가공업자, 타 식육포장처리업자, 건강기능식품은 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p> <p>2. (생 략)</p> <p>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p>	<p>-----</p> <p>----- <u>소비기한</u> -----</p> <p>1. ----- <u>소비기한</u> -----</p> <p>2. (현행과 같음)</p> <p>3. -----</p>

현 행	개 정(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다만, 유통기간 설정실험 수행 가능 품목은 지정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하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따른 국외 시험·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유통기간 설정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 기계·기구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u>소비기한</u>

현 행	개 정(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b>제3장 유통기간 설정실험</b>	<b>제3장 소비기한 설정실험</b>
제5조(실험계획)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품의 소비기한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지표(실험항목), 실험 시 저장조건, 검체 채취방법 및 소비기한 예측 방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계획) <u>소비기한</u>
제6조(설정실험 지표 등) ①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는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관능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설정실험 지표 등) ① <u>소비기한</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설정실험 시 저장조건 등) (생 략)	제7조(설정실험 시 저장조건 등) (현행과 같음)
제8조(실험방법 등) 유통기간 설정 실험 지표의 실험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제8조(실험방법 등) <u>소비기한</u>



현 행	개 정(안)
(다만,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	(----- ----- -----).
1. 식품	1. ---
가. <u>별표 3</u> 식품의 <u>권장유통기간</u>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가. <u>식품의 권장소비기한</u> -----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b>제5장 달걀의 소비기한 설정</b>	<b>제5장 달걀의 소비기한 설정</b>
제13조(달걀의 소비기한 설정)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22)에 따라 제품의 특성과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u>설정하여야</u> 하며 <u>별표 4</u> 를 참고할 수 있다.	제13조 (달걀의 소비기한 설정)----- ----- ----- ----- ----- <u>설정하여야</u> 한다.
<b>제6장 기준의 적용</b>	<b>제6장 기준의 적용</b>
제14조(기준의 적용) (생 략)	제14조(기준의 적용) (현행과 같음)
<b>제7장 재검토기한</b>	<b>제7장 재검토기한</b>
제15조(재검토기한) 「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 」(대	제15조(재검토기한)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u>

현 행	개 정(안)
<u>통령훈령 제334호</u> )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관리에 관한 규정</u> 」----- ----- ----- ----- <u>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u> 안 -----.
[별표 1] ~ [별표2] (생 략)	[별표 1] ~ [별표2] (별지와 같음)
[별표 3] ~ [별표4] (생 략)	[별표 3] ~ [별표4] (삭 제)





### 제1장 제품의 특성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또는 품목, 성상, 사용원료, 제조·가공과정,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단위, 보존 및 유통온도 등 실험 수행을 위한 일반적 사항 기록 및 검체의 성상, 포장상태, 구성 식품의 정보, 표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 제2장 실험방법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지표(실험항목)별 실험방법, 실험시 저장조건, 품질한계, 데이터 분석에 적용된 통계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실험방법 기록

### 제3장 실험결과

실험데이터, 소비기한 예측방법 등 실험결과에 대한 분석 기록

### 제4장 결론

소비기한 예측 등 실험결과 요약 기록

### 제5장 참고자료

소비기한 설정실험에 참고한 문헌이나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u>소비기한</u> 설정사유서	
제 품 명	
식품의 유형 (식품첨가물 품목명)	
보존 및 유통 방법	실온( ) / 상온( ) / 냉장( ) / 냉동( ) / 기타( )
<u>소 비 기 한</u>	
실험수행기관종류	자사( ) / 의뢰( ) / 생략( )
실험수행기관명	
<u>소비기한</u> 설정근거	
<p>상기와 같이 <u>소비기한</u> 설정사유서를 제출합니다.</p> <p>첨부 : 별지 제2호 서식의 <u>소비기한</u> 설정실험 결과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인 :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